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4년 03월 11일

회 사 명 : 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
(영문명) LB Asset Management
(홈페이지) <http://www.lb-amc.com/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20층(태평로1가, 서울파이낸스센터)
(전 화) 02-6371-3209

대 표 이 사 : 김형석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본부장/이사
(성 명) 김민철 (전 화) 02-6371-3208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원/과장
(성 명) 박지현 (전 화) 02-6371-320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1. 정관 변경사유

- 사업목적 추가 (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업무 추가)

2. 주요 변경 내용

- 제2조 목적, "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의 업무" 추가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2조 【목 적】</p> <p>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이라 한다)상 집합투자업</p> <p>1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</p> <p>1.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</p> <p>1.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업무 및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</p> <p>1.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</p> <p>1.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</p>	<p>제2조 【목 적】</p> <p>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이라한다)상 집합투자업</p> <p>1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</p> <p>1.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</p> <p>1.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업무 및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</p> <p>1.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</p> <p><u>1.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의 업무</u></p> <p>1.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</p>	<p>부동산투자회사 법상 자산관리회 사업무 추가</p>